|  |  |  |
| --- | --- | --- |
|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설비 등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의 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10]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신식화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09]55호)의 규정에 따르고, 국내 관련산업발전 정황에 근거하여, 유관 주관 부문, 산업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을 기초로 연구를 통해 결정하여 대형환경보호 및 자원 종합이용 설비, 응급 디젤 발전유닛, 비행장 화물 분류 시스템, 중형 형철 정압기 및 관련 부품 원자재 수입세수정책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지한다.1. 2010년 6월 1일부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이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대형 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 설비, 응급 디젤 발전유닛, 비행장 화물 분류 시스템, 중형 형철 정압기(첨부 1 참조)를 생산하여, 확실하게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 원자재(첨부 2 참조)에 대해 관세와 수입부분 증치세를 면제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재관세[2009]55호 문건에 첨부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제 3조에서 열거하는 항목과 기업이 본 통지 첨부 3의 문건에 나열된 자가이용 설비 및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상기 설비 수입에서의 기술 및 구성요소, 부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3. 국내기업이 본 통지 첨부 1 문건과 관련된 영역 또는 수입세수 우대 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의 요구사항과 순서는 반드시 재관세[2009]5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 중, 기업이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수입규정 범위내의 부품, 원자재를 본 수입세수정책 적용을 원하여 이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 2010년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2011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기간에 재관세[2009]55호 문건이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신청문건을 제출한다.

공업과 정보화부 또는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반드시 재관세[2009]5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문건을 심사하고, 신청문건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공시에 신청 기업에 수리 증명문건을 발급한다.신청 기업은 관리부문에서 출시 한 증명자료로 해관에 세금담보를 신청하여 유관 부품 및 원재료 통과절차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부문은 2010년 10~11월과 2011년 3월 기간에 접수한 신청 기업과 2011년 4월 15일 전에 신청을 접수받은 서류 및 초심의견을 종합하여 공업과 정부화 부서에 보고한다.1.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기술장비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0]17호) 첨부 1,2,3 중의 “대형 고로overbottom 압력터빈발전장치”를 “대형 고로 석탄가스overbottom압력터빈 에너지회수 이용장치”로 개명하고, 국내 기업이 해당 장비수입의 세수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 시 요구사항과 순서는 본 통지 제 3조와 비교하여 집행한다.

재관세[2010]17호 문건 첨부 3 제 13류 “전력전달설비”항목의 “직류전력전달설비”에 제 1,2,4,5,9조의 제품을 포함시킨다. “교류전력전달설비”에는 10,11,13,14,15,17,18조의 제품을 포함시킨다. “교직류통용전력전달설비”에는 제 3, 6, 7, 8, 12, 16, 19, 20, 21, 22, 24, 26조 제품을 포함시킨다.첨부: 1.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등 중대 기술장비 목록2.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설비 등 중대기술장비 수입 주요 부품, 원자재 제품 목록3. 수입 비면세 일부 중대기술 장비 목록재정부공업과 정보화부　　　　　　　　　　　　　　　　　　　　　 세관총서국가세무총국2002년 9월 30일  |  | **关于调整大型环保及资源综合****利用设备等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10]5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国家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　　按照《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国家能源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09]55号）规定，根据国内相关产业发展情况，在广泛听取有关主管部门、行业协会及企业意见的基础上，经研究决定，对大型环保和资源综合利用设备、应急柴油发电机组、机场行李自动分拣系统、重型模锻液压机及其关键零部件、原材料进口税收政策予以调整，现通知如下：　　一、自2010年6月1日起，对符合规定条件的国内企业为生产国家支持发展的大型环保和资源综合利用设备、应急柴油发电机组、机场行李自动分拣系统、重型模锻液压机（见附件1）而确有必要进口部分关键零部件、原材料（见附件2），免征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　　二、自2011年1月1日起，对财关税[2009]55号文件附件《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第三条所列项目和企业进口本通知附件3所列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及配套件、备件，一律征收进口税收。　　三、国内企业申请享受本通知附件1有关领域进口税收优惠政策的，具体申请要求和程序应按照财关税[2009]55号文件有关规定执行。其中，企业在2010年6月1日至12月31日、2011年1月1日至12月31日期间进口规定范围内的零部件、原材料申请享受本进口税收政策的，分别应在2010年10月15日至11月15日、2011年3月1日至3月31日期间按照财关税[2009]55号文件规定的程序提交申请文件。　　工业和信息化部或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按照财关税[2009]55号文件规定审查企业的申请文件，申请文件符合规定的，应当予以受理，并向申请企业出具受理证明文件。申请企业凭受理部门出具的证明文件，可向海关申请凭税款担保先予办理有关零部件及原材料放行手续。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在2010年10-11月和2011年3月期间受理的申请企业，应在2011年4月15日前一并将申请文件及初审意见汇总上报工业和信息化部。　　四、《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暂行规定有关清单的通知》（财关税[2010]17号）附件1、2、3中“大型高炉余压透平发电装置”更名为“大型高炉煤气余压透平能量回收利用装置”，国内企业申请享受该装备进口税收优惠政策的，具体申请要求和程序比照本通知第三条执行。　　财关税[2010]17号文件附件3第十三类“输变电设备”项下“直流输变电设备”包括第1、2、4、5、9条商品；“交流输变电设备”包括第10、11、13、14、15、17、18条商品；“交直流通用输变电设备”包括第3、6、7、8、12、16、19、20、21、22、23、24、26条商品。　　附件：1.大型环保及资源综合利用设备等重大技术装备目录　　2.大型环保及资源综合利用设备等重大技术装备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清单　　3.进口不予免税的部分重大技术装备目录　　　　　　　　　　　　　　　　　　　　　 财政部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国家税务总局　　　　　　　　　　　　　　　　　　　　　 二○一○年九月三十日  |